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표준처리기간(제9조제2항 관련)**

**1. 항목별 표준처리기간**

시험항목				시험 검사 기간 (A)	행정 처리 기간 (B)	표준 처리 기간 (A+B)
수질 (침출수 포함)	대기/ 소음·진동	악취	실내 공기질			
수소이온농도(pH), 온도, 용존산소(DO)	소음, 진동, 매연,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현장 측정	2일	2일
	먼지, 황산화물		미세먼지(PM10)	2일		4일
부유물질(SS),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색도, 총대장균군	암모니아,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복합악취, 암모니아	석면, 라돈	3일		5일
	질소산화물, 불소화물, 이황화탄소, 염소, 황화수소, 브롬화합물, 페놀화합물,			4일		6일
총인, 총질소, 페놀, 시안, 불소, 노말렉산추출물질, 음이온계면활성제(ABS)				5일		7일
철, 아연, 구리, 카드뮴, 납, 망간, 크롬, 6가크롬, 총대장균군(시험관법)	카드뮴/납/구리/아연/ 크롬/니켈 화합물			6일		8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포름알데히드	아세트/프로피온/ 뷰티르/n-발레르 / i-발레르 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7일		9일
수은, 비소,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은화합물, 비소화합물, 벤젠, 염화비닐	메틸머captan, 황화수소, 디메틸설파이드, 디메틸디설파이드, 트리메틸아민, 스티렌	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9일		11일
유기인, 폴리클로리 네이트드비페닐(PCB)				14일	16일	

비고 : 1. 표준처리기간(행정처리기간 포함)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시료채취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이며, 접수일(13:00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먹는물 시료의 표준처리기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수질검사신청서의 처리기한에 따른다.

3. 토양 시료의 표준처리기간은 건조 토양을 시료로 사용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수질항목의 표준처리기간에 25일을 더한다. 단, 수분, 휘발성유기화합물, 총탄화수소의 시험·검사기간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각각 7일, 14일, 40일로 한다.
4. 사업장폐기물 시료의 경우 수질항목의 표준처리기간에 3일을 더한다.
5.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은 시험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기간을 준용한다.

## 2. 처리기간의 지연 및 초과된 일수의 산정

- 가. 환경시료의 특이성에 따른 시간소요, 재시험 실시, 시험물량 과다집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처리기간을 지연할 수 있다.
- 나.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된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을 포함한다.